

일반의안 검토보고서(추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혜진]

목 차

1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계획 동의안	[경제기업과]	1
---	------------------------------	---------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 특별지원계획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24. 2. 26.
나. 제 출 자: 거창군수
다. 회부일자: 2024. 2. 27.

2. 제안이유

- 가.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주)가 투자하는 회사로 거창의 공장에서 즉시 생산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증대 및 거창군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나. 대기업이 투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승강기고·대학 학생의 거창에서의 취업으로 이어지는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
다. 기존 승강기업체와 에스컬레이터 부품·설치·물류업체와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되므로 투자기업에 특별지원 필요

3.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 거창승강기베스트밸리 투자 기업체(K-Escalator(가칭))
나. 투자계획 : 투자금액 58.6억 원(매입 44.6억 원 + 신설 14억 원)

투자 예정 금액	연간생산량	연간고용인원
- 대륜엘리스 매입 : 44.6억 원 - 토지 9.9 건물 34 기계 등 0.7 · 신설 설비 투자 : 14억 원	· 연 300대(월 25대) - 7천만 원 × 300대 = 210억	· 고용인원 : 12명 - 임원 1, 제조 5, 판관 4, 연구 2

○ 감정평가결과(평가기관 : (주)나무감정평가법인)

① 대륜엘리스 매입에 대한 평가결과

(단위 : 원)

구 분	평가액	취득가액	면적 또는 수량	취득가액과의 차이
4종류	4,463,863,740	5,464,400,632		
토 지	989,694,900	972,611,000	8,046㎡	1.8%
건 물	3,402,438,840	4,339,978,636	3,674㎡	-21.6%
기계기구*	63,030,000	140,690,995	3식	-55.2%
비 품**	8,700,000	11,120,001	6식	-21.8%

*기계부품 3식 : 천정코레인(호이스트),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는 건물가액 포함

**비품 6식 : TV, 냉장고, 워시타워, 공기청정기, 침대, 사무용 가구

② 에스컬레이터 조립 Line 구축 및 옥외 Test tower 신설

(단위 : 원)

구 분	공장설비투자액	수량	비 고
2종류	1,400,000,000		
기계기구	1,200,000,000	크레인 5억, 용접라인 4억, 조립라인 1억, 옥외Test tower 2억	
비 품	200,000,000	지게차 1억, 사무기구 02억, 컴퓨터 등 02억, 공조시설 외 06	

다.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거창공장 매입 금액 44.6억 원 지원(감정평가액)
- 지원시기 :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의회 의결 이후
- 지원방법 : 군의회 동의를 받아 결정

라. 사후관리

- 입지보조금 : 부동산 부기등기 및 이행보증증권발행
- 설비보조금 : 기계장비 관리번호 부여 및 라벨 부착

"사후관리기간"이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 받은 기업에게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통보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4. 관련법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및 추가지원)
- 거창승강기산업밸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가칭 K-Escalator로 현대엘리베이터서비스(주)에서 투자하는 설립 예정인 기업으로 현재까지 법인설립 여부, 회사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우리군과도 업무협약(MOU)체결 이전임.
- K-Escalator에서 투자하려는 예상 금액은 승강기업체인 (주)대륜엘리스의 토지·건물·설비 등 매입비 약 44억 6천만원과 신규 설비 14억원으로 총 58억 6천만원 정도이며,
- 연간 생산량은 300대, 21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고용인원은 12명으로 예상함.
- 우리군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금액은 입지보조금과 설비보조금을 합한 44억 6천만원(대륜엘리스 매입) 정도 예상하고 있음

* (주)대륜엘리스 업체현황

- 소재지 :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2405 외 2필지(승강기농공단지 내)
- 공장준공/등록일 : 2022. 4. 11 / 2022. 6. 14
- **보조금 지원액 : 742,504천원**(도비 407,251, 군비 335,253) ※ 환수 계획임
- 감정평가액 : 44억 6천만원(토지, 건물, 기계 등)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와 제7조에 따르면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비의 70%범위 내, 설비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 본 동의안의 경우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21조, 「거창군 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하고자 함.
-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이머전 리서치(EMERGEN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세계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시장 규모는 1,434억 달러였고, 도시화로 인해 스마트 차량 운송 시스템을 갖춘 건물이 증가하면서 2032년까지 6.5%의 매출 복합 연간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 아울러, 거창군에서는 국내에서 연평균 1,489대의 에스컬레이터가 생산되며 K-Escalator가 그중 380대를 공급해 25.52%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기업 유치 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 및 인구 유지, 승강기 벨리의 시너지 효과, 거창군 세수 증대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 K-Escalator는 현재 설립 예정인 회사로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자본금 등 기업 정보가 없어 성장성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명백한 투자의향 확보와 보조금 지급 후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해 보임.

참 고

관련 법규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입지보조금)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도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비용(이하 “도비”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023.6.28.)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제7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설비보조금(도비를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2023.6.28.)

1.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다만 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 시

2. 기업당 최고 30억원까지

3.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일 것

②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3.6.28.)

□ 거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제21조(기업유치 특별지원) 군수는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2023.6.28.)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승강기산업체 투자 지원)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 밖에 소재하는 승강기 산업체가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하는 승강기산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의 수도권 지역 외에 소재하는 승강기산업체를 밸리에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거창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의 기준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밸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